

계룡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29 호
의결년월일	2005. 9. . (제 18 회)

제출일자	2005. 8.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6. 30 ⇨ 5. 31)의 변경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안 제26조의 2)
- 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입법예고 : 생략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2005. 8. 19)에 의거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 6. 1일 기준 소급 적용하여 금년에 한해 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 시행
- 9. 10일 부과 도래로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여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 및 법제업무규정 제14조 제4항에 의거)

⇒ 계룡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이행여부 법률 검토보고(2005. 8. 22일 : 시민봉사과-5720)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명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계룡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적용시한) 제26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규></u>	제26조의2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관 련 법 령(발 체)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7조 (공익등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수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